

#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407
----------	-----

2023. 10. 18.(수)  
건설환경소방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3년 10월 4일

다. 회부일자 : 2023년 10월 4일

라. 상정일자 : 2023년 10월 17일

- 제41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강성환 균형건설국장)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 12. 31.로 도래됨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안정적 추진기반 확보를 위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변경(안 제13조의2)  
-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조문 수정(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8조)

## 3. 검토의견(김홍식 수석전문위원)

### 가. 검토사항(조례개정 필요성 및 관련법령 적합성 등)

- 「지방재정법」(이하 “법”) 제9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경우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에 따라 ‘18. 11. 19.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23. 12. 31.을 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으로 정한 바 있음.
- 우리 도는 ‘22년부터 5년간 도 내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 중으로 이에 대한 재원은 특별회계로 충당하고 있고, 충북도의 지역발전도 분석 결과를 보면 도 내 지역간 불균형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아 해당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해 보임.

### 참 고

#### < 충북도 내 지역발전도 분석 결과 >

시 군	청주	진천	음성	충주	증평	제천	옥천	보은	영동	단양	괴산
발전도	1.66	1.60	1.02	0.18	-0.04	-0.32	-0.49	-0.85	-0.87	-0.89	-1.00

\* 출처 :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 4단계(2022~2026) 추진방침(2021. 2.)

- 한편 법 제9조제4항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 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23. 8. 9.~11.)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2028. 12. 31.까지)' 안건에 관하여 심의한 결과, 원안의결되어 법률상 절차를 준수하였음.
- 그 밖의 조문이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입법예고('23. 8. 29.~'23. 9. 18.)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 나. 검토의견

-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현행 2023. 12. 31.에서 2028. 12. 31.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 도 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추진 중으로 이 사업에 대한 재원을 특별회계를 통해 충당하고 있는 점, 특별회계 연장을 위한 상위법의 절차를 준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8.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07
----------	-----

제출연월일 : 2023년 10월 4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 12. 31.로 도래됨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기반 확보를 위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변경(안 제13조의2)  
-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조문 수정(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8조)

3. 의안전문 : 불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불 임

5. 관계법령 발체 : 불 임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내 균형발전 촉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를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충청북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사업이 나”를 “사업이나”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충청북도(이하“도””를 “충청북도(이하 “도””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기본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를 “기본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기본계획은”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으로, “수립하고 충청북도균형발전위원회”를 “수립하고, 제14조에 따른 충청북도균형발전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또한 수립된”을 “수립된”으로, “변경할 때에도”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으로 한다.

제5조 중 “수립·시행”을 “수립·시행”으로 한다.

제8조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연1회”를 “연 1회”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균형발전 특별회계 등”을 “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특별회계의 설치)”를 “(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전입금과 그 밖에”를 “전입금 및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기타 균형발전”을 “균형발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예비비”를 “그 밖의 예비비”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의한 불균형실태”를 “다른 불균형실태”로, “의한 평가결과”를 “다른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결과”로 한다.

제13조의2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충청북도 균형발전 위원회 등”을 “충청북도균형발전위원회 등”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충청북도 균형발전 위원회 설치)”를 “(충청북도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역균형발전시책”을 “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시책”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를 “각각 호선(互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균형건설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가. 충청북도의회의원 2명

나.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제3조에 따른 도정 정책자문단

위원 2명

다. 제18조에 따른 지역발전연구센터의 연구원 또는 자문위원 2명

라.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 분야에 전문성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충청북도의회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균형발전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5조의2의 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를 “(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의 위촉을 해제”를 “위원을 해촉”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8조제1항 중 “권역별”을 “도지사는 권역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관”을 “공공연구기관”으로, “권역내의 대학교수, 전문가, 공무원, 의회 의원, 주민 등 균형발전 관련”을 “해당 권역 내의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주민 중에서 지역균형발전에 관한”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하여”를 “관한 계획의 수립, 추진과정 점검 및 성과 평가 등 사업 전반에 대한”으로, “위하여 계획수립, 추진과정, 성과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평가 및 컨설팅을 위하여 공공연구기관에”를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역발전연구센터”를 “연구센터”로, “경우”를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u>도내 균형발전 촉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 ----- <u>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충청북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u>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이란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견인할 새로운 <u>사업</u>이 나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저발전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투자하는 사업을 말한다.</p> <p>3. (생 략)</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u>사업</u>이나 ----- ----- -----.</p> <p>3. (현행과 같음)</p>
<p>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u>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u>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p>	<p>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u>충청북도(이하 “도”</u> ----- ----- ----- -----.</p>

② (생략)

제4조(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생략)

③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④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은 관련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청북도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수립된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균형발전사업의 지도·점검) 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 의거 수립한 시행계획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 등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균형발전사업의 평가)

① 도지사는 연1회 이상 지역균형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기본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

④ -----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 수렴하고, 제14조에 따른 충청북도균형발전위원회의 -----  
수립된 -----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

제5조(시행계획 수립) -----  
-----  
-----  
수립·시행-----  
-----.

제8조(지역균형발전사업의 지도·점검) -----  
-- 따라 -----  
-----  
-----.

제9조(지역균형발전사업의 평가)

① ----- 연 1회 -----

발전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컨설팅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장 균형발전 특별회계 등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생략)

제11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지역자율계정도 배정분의 5퍼센트 이상 금액 중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비

3. 일반회계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4. (생략)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기타 균형발전 위탁 사업비의 지원

4. 예비비 등

제12조(세출예산의 차등지원) ①  
도지사는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시·군의 재정상황 및 제6조에 의

-----  
-----.

② (현행과 같음)

제3장 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제10조(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현행과 같음)

제11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

3. -----  
전입금 및 그 밖의 -----

4.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균형발전 -----  
-----

4. 그 밖의 예비비 -----

제12조(세출예산의 차등지원) ①  
-----  
----- 따

한 불균형실태 조사결과와 제9조에 의한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 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② (생략)

제13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장 충청북도 균형발전 위원회 등

제14조(충청북도 균형발전 위원회 설치) 지역균형발전시책 수립 및 지역간 균형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5조(구성과 운영) ① (생략)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은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업무담당 실국장

른 불균형실태 -----  
따른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결과

-----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

제4장 충청북도균형발전위원회 등

제14조(충청북도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시책 -----  
-----  
-----  
-----.

제15조(구성과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각각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균형건설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 가. 충청북도의회의원 2명
  - 나.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

2. 위촉 위원은 충청북도의회의원 2명, 충청북도정책자문단 위원 2명, 지역발전연구센터 2명,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발전전문가 등

④ 제3항제2호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 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도의원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 소집 권한을 갖는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단 조례」 제3조에 따른 도정 정책자문단 위원 2명

다. 제18조에 따른 지역발전연구센터의 연구원 또는 자문위원 2명

라.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 분야에 전문성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충청북도의회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5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1. ~ 3. (생략)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 1.·2. (생략)
- ②·③ (생략)

제18조(지역발전연구센터 및 권역별 연구팀 운영) ① 권역별 균형 발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와 정책 제시를 위하여 공공연구기관에 지역발전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센터는 설치된 기관의 책임연구원이 총괄 운영하며, 권역 내의 대학교수, 전문가, 공무원, 의회 의원, 주민 등 균형발전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균형발전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5조의2(위원의 해촉) -----  
-----  
----- 위원을 해촉  
-----.

- 1. ~ 3. (현행과 같음)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1.·2. (현행과 같음)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지역발전연구센터 및 권역별 연구팀 운영) ① 도지사는 권역별 -----  
-----  
-----.

② ----- 공공연구기관----- 해당 권역 내의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주민 중에서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

자를 연구원 및 자문위원으로 위  
촉할 수 있다.

③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에 대하  
여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획수립, 추진과정, 성과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평가 및  
컨설팅을 위하여 공공연구기관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권역별 연  
구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역발전연구센터 및 권역별 연구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필  
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사람을 -----  
-----.

③ ----- 관한 계획  
의 수립, 추진과정 점검 및 성과  
평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 위  
하여 -----  
-----  
-----  
-----.

④ ----- 연구센터 -----  
-----  
----- 경우 예산의 범위에  
선 -----.

## 관련법령 발취

###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4항 제1호

## ○ 사 유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사업의 재원인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 ○ 작성자 : 균형건설국 균형발전과장 김선희